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2) 상정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이 경 섭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테크노파크 203동(첨단산업연구단지)과 401동(로봇산업연구단지)에 대한 건물 관리의 이원체제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대부요율의 결정안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산업진흥재단에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 요율의 결정안 및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|---|
| <p>○ 지난번 본 조례의 미 개정으로 관련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금번 개정안이 동의안 의결에 부합되는 개정안인가?</p> <p>○ 산업진흥재단의 관리 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가?</p> | <p>○ 대부 요율의 결정안과 입주기관 재편성 내용을 주 근거로 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음.</p> <p>○ 현재도 정원모두가 충원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음.</p> 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439호 |
| 의결 연월일 | 2005. 10. 21 (제122회) |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테크노파크 203동(첨단산업연구단지)과 401동(로봇산업연구단지)에 대한 건물 관리의 이원체제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대부요율의 결정안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산업진흥재단에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요율의 결정안 및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 를 “부천시 산업진흥재단
설립 및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대표이사는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천시
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대부요율의 결정안
2.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

제2조중 “중소기업기본법”을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제4조중
“민법”을 “「민법」”으로 하며, 제19조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
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<u>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</u> 제19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<u>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</u> 제19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②대표이사는 공유재산 운영과 관 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천시 지 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대부요율의 결정안</u> <u>2.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</u></p> |